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67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김병주 · 허성무 · 김성희
진성준 · 강득구 · 윤종균
황명선 · 박 정 · 전현희
한민수 · 박용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과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총경”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2조(신고의무자)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총경</u> (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9. <u>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 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u> -----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